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12. 4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2월 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(2000. 12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수도행정과장 최중화)

□ 제안이유

○ 상수도 누수량 감면시 수용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과 격월검침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수도전을 가정용과 타업종의 중복사용시 가구별 사용량이 10㎡ 미만은 영업용, 10㎡~15㎡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량은 영업용요금 부과 ⇒ 가구별 15㎡까지는 가정용으로, 잔여량은 해당업종 요금을 적용하여 수혜폭을 확대(안 제27조)

○ 가정용 누수요금 감면을 단계별 일괄 적용함으로써 감면신청 전 요금보다 많이 부과되는 경우에 당초금액을 적용(안 제28조)

○ 상수도사용료 2개월 미납시 정수처분을 ⇒ 사용료 미납시 정수처분(안 제40조)

※ 격월검침제 시행으로 수도사용 후 6개월 이후에 정수처분하게 되어 체납액 누적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현재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, 영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?</p> <p>○ 조례 개정시 수용가에 혜택을 주는 것인가?</p> <p>○ 상수도 사용료를 2개월 미납시 정수처분 하던 것을 현월 사용료 미납시 바로 급수 정지를 시키는 이유는?</p>	<p>○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톤으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적용 함</p> <p>○ 네</p> <p>○ 격월 검침제 시행으로 수도사용 후 6개월 이후에나 정수처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체납액 누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사용료 미납시 바로 정수처분코자 하는 것임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19호
의결년월일	2000. 12. 23 (제83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2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상수도 누수량 감면시 수용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항과 격월검침제 시행 등 제도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○ 수도전을 가정용과 타업종의 중복사용시 가구별 사용량이 10㎡ 미만은 영업용, 10㎡~15㎡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량은 영업용요금 부과 ⇒ 가구별 15㎡까지는 가정용으로, 잔여량은 해당업종요금을 적용하여 수혜폭을 확대(안 제27조)

○ 가정용 누수요금 감면을 단계별 일괄 적용함으로써 감면신청 전 요금보다 많게 부과되는 경우에 당초금액을 적용(안 제28조)

○ 상수도사용료 2개월 미납시 정수처분을 ⇒ 사용료 미납시 정수처분(안 제40조)

※ 격월검침제 시행으로 수도사용 후 6개월 이후에 정수처분하게 되어 체납액 누적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㎡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1단계의 요율을 적용한다”를 “1단계의 요율을 적용하되, 산정요금이 처음 부과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초금액을 적용한다”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 중 “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”를 “사용요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천시수도급수조례</p> <p>제27조(업종의 구분) ① 및 ②(생략) <u>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.</u></p> <p>1. <u>월 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는 가구당 월 사용량(이하 “가정용 가구당”이라 한다.)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-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. 다만,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.</u></p> <p>2. <u>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(기본량)을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톤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-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톤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. 다만,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적용한다.</u></p> <p>3. <u>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톤(기본량)을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-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. 다만, 위의 수도요금 이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월 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천시수도급수조례</p> <p>제27조(업종의 구분) ① 및 ②(현행과 같음) <u>③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㎡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.</u></p>